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15:00 배포 2026. 11. 25.(수) 06:00

전국 농촌공간정책심의위원 150명 한자리에…‘농촌공간정책심의회 합동 포럼’ 세종서 개최

– 농촌공간계획 수립·심의 본격화에 맞춰 정책 방향 공유하고 발전 방향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5일(수)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6 농촌공간정책심의회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과 시·도, 시·군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국 농촌지역 139개 시·군 모두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경남 합천에서 첫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되는 등 농촌공간계획이 수립 단계에서 심의·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 **농촌공간계획**: 농촌의 난개발 및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개별·분산적 개발 형태를 종합·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4.3.), 지역 주도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통합지원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에 관한 계획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식품부에 중앙심의회, 시·도에 광역심의회, 시·군에 기초심의회를 두고 있다. 중앙심의회는 국가 기본방침과 주요 시책을, 광역·기초심의회는 시·군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이번 포럼은 전국의 농촌공간계획이 본격적인 심의·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 중앙·광역·기초 심의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심의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월 17일 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농촌특화지구 계획이 새로 도입되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본격화되는 만큼,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심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포럼에서 농식품부는 '27년도 농촌공간 정책 방향과, 기초·광역 심의회의 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민간위원장인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광역·기초 심의회 간 역할 분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도 심의와 실행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6 농촌공간정책심의회 합동 포럼' 개요
2.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이동언 (044-201-15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2026 농촌공간정책심의회 합동 포럼' 개요

□ 개요

○ **(목적) 농촌공간 정책**의 종합·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위원 간 **정책방향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일시)** '26. 11. 25.(수) 10:00~15:10

○ **(장소)**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홀(2층) * 세종시 다솜3로 6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참석자)** 주최·주관기관,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위원 등 150여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참석자 등록 및 접수	
10:30~10: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35~10:40	5'	인사 말씀	농림축산식품부
주제 발표			
10:40~11:20	40'	(발표1) 정책 방향 및 정책심의회 운영 방향	농림축산식품부
11:20~11:50	30'	(발표2) 계획 수립과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역할	이유직 교수 (부산대학교)
11:50~13:00	70'	**중 식**	
13:00~14:00	60'	(발표3) 농촌공간정책심의 발전방향(2개 기관)	신지훈 교수(광역) 심재헌 박사(기초)
종합 토론			
14:00~15:00	60'	(좌장) 이유직 교수 (토론자) 농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장), 발표자(2인) 및 광역·기초 전문위원(5인)	전문위원(5인) 배승종 교수, 손재권 교수, 김강현 박사, 박찬돈 교수, 조성걸 박사
15:00~15:10	10'	마무리말씀 및 폐회	

붙임2 **농촌공간계획 제도 개요**

1. 추진배경

□ 그동안 농촌은 **주거, 경제기반** 등에 대해 **개별·분산적**으로 개발

○ **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 체계 미흡**에 따른 주택과 공장·축사 혼재 등 **난개발**은 정주 여건을 더욱 악화하고 투자 효율성 저하

< 공장, 창고, 축사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지역 >





⇒ 난개발 및 소멸 문제 대응 등을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지역 주도 **농촌공간계획** 체계로 **정책의 틀 전환**('24.3.29. 시행)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계획 체계)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으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농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계획 수립***

* 주거·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관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주민제안·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수요·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

* (주민제안) 지역에 필요한 농촌 재생사업,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시·군에 제안

* (주민협정) 농촌특화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규약 마련 → 시·군이 이행 지원

□ **(농촌특화지구)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활용,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집적화**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농촌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규제 완화**(농지 등), **사업 집중**으로 흩어져 있는 산업·서비스 시설 집적

□ **(통합 지원)** 시·군이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통합 지원**

* 5년간 최대 400억 원 국비 사업 패키지 지원 / '26년까지 98개 시·군 협약 체결

⇒ **(기대효과)** 공간을 **기능별·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인허가 중심의 축사·공장 입지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 및 **정주환경 개선**